

건설현장 안전점검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for Reformation(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Safety Inspection Systems

한 재 구*

이 수 경**

Han, Jae-Goo

Lee, Soo-Kyong

Abstract

Construction safety inspections come in a wide variety of types. The types of inspection are, 1)a self-checking and a periodical-checking by contractors, 2) a site inspection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rt (MOLIT) or licensing organizations and 3) others. In this situation, there are needs to determine fuction of the safty inspection and roll of stakeholders for the inspection to avoid unnecessary duplication and serious omis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a guide line for improving of consturction safety inspection systems as a fundamental research.

키 워 드 : 건설안전, 안전관리, 안전점검

Keywords : construction safety, safety management, safety inspectio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전국 건설근로자 수는 278만 명으로 그중 23,349명이 업무상 질병 및 재해로 다치고 496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4년간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건설부문 안전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건설현장 안전점검제도는 시공자가 시행하는 자체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 국토교통부 또는 인허가기관이 시행하는 현장점검,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안전점검에서 공공기관은 인력 한계로 대형 건설현장 위주로 점검하는 반면, 업체는 중복점검을 지적하는 등 행정력 중복투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검기준이 미흡하여 점검자의 역량에 따라 과다 · 부실점검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가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과 공무원이 연 1~2회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점검취지에 부합하는 점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써 안전점검 체계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로 한정하며, 수행방법은 현행 안전점검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건설현장 안전점검 관련 법령분석 및 안전점검체계 개선 방향제시

건설안전과 관련한 건설안전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과 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행정부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이 있다.(표 1참조) 이러한 건설안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상 안전점검의 종류와 유형을 나누면 다음 표2와 같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 여러 법령과 규정에 혼재되고 점검의 종류가 분화 되어있으며 시행 주체와 점검 시기도 혼재 되어있어 중복점검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주체별 점검항목을 조정하여 행정력 중복투입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의 체크리스트는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사별 주요 검토항목을 토대로 만들어짐으로써, 시공자의 안전점검과 발주청의 안전점검이 중복점검이라는 지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공학석사, 교신저자(jghan@kict.re.kr)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공학석사

표1. 건설공사 안전관련 법령(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기준/지침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54조, 제62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9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실시, 해빙기에 대형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점검

표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종류(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관	종류	시기	대상
국토 교통 부	중앙점검(건설안전과)	해빙기, 우기, 동절기	· 저가수주공사, 건설사고 발생 현장 위주
	중앙품질안전관리단점검 (도로·철도·수자원정책관실)	반기별 1회	· 대형국책사업(해당분야별 관리단장이 선정)
	특별감리감수단점검 (국토부, 지자체 6급이상)	반기별 1회	· 책임감리 현장 중 부실제보, 부실관련 언론보도 현장 · 대규모 건설현장
	지방국토관리청점검	해빙기, 우기, 동절기	· 관내공사(부실민원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중 선정
	발주청점검(지방국토청제외 산하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해빙기, 우기, 동절기	· 지방국토청제의 산하기관 : 자체 발주공사 현장 중 선정 · 지자체 : 자체발주공사와 인·허가 건설공사에 한하여 선정
	별도점검		· 재난발생시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실에 대해 구체적 민원이 제기된 경우,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안행 부	재난취약시설점검(각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	해빙기 기타	· 대형공사장 · 시기별, 계절적요인, 사회적이슈 등을 감안하여 선정
시공 사	자체안전점검	매월	·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정기안전점검	공종별 2~5회	· 공종별로 2차~5차로 점검시기를 구분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시
	초기점검	준공전	· 준공하기 전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공사중단 후 재개	·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전

공종 구분	공 종 별 점 검 항 목	발주처	건설 사업 관리자	시공사	국토 교통부	
1. 기초공사	1. 지내력 확인(지내력시험등) 여부 점검		●	●		
	2. 최종 굴착 종료 판정 여부 점검	●	●	●	●	
	3. "주변에 미치는 영향" 여부 점검(1) 지내력 판정 시행 여부 점검		●	●		
2. 하부공사	기초공	1. 기초와의 일체성 여부 점검	●	●	●	
		2. 세굴에 대한 안전 여부 점검		●	●	
	콘크리트공	1. 동바리의 안전 여부 점검	●	●	●	●
		2. 비제의 안전 여부 점검		●	●	
		3. 1회 콘크리트 치기높이 안전 여부 점검			●	
		4. 두부 콘크리트 치기시 안전 여부 점검			●	
						●
4. 부대공사	1) 방수, 배수 등의 안정 및 적정 여부	●	●	●		

그림 1. 점검주체별 체크리스트 개선안, 예시

3.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안전점검 체계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관련 법령과 각종 점검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향후 본 연구방향 설정을 토대로 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4.10
2.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http://www.kosha.or.kr>>, 2014.10